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재공고 및 신청 안내
- Global SNU Research Partnership Platform -



2024. 11.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

1. 사업 목적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교, 연구소 등, 이하 '해외 협력기관'이라 함)과 국제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 지원

※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내 혁신연구소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부-교육부 협업으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시행 예정, 해당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사업 공고(연구정책과-4606)를 수정하여 재공고하고자 함
(국가연구소 학내 선정 절차 시 본 사업 선정기관에 가점 부여)

2. 지원 분야

- 해외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첨단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인류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신청 대상

- 본부 주관 연구소 및 대학 주관 연구소
 - 지원 분야(첨단 국가전략기술 확보, 인류난제 해결)에 한해, 연구소별 1개 신청서 제출 가능
 - 여러 연구소로 이루어진 통합연구원(공학연구원, 의학연구원 등)은 연구원 내 국제공동연구센터 설치가 가능한 1개 대표 분야만 신청 가능
 - 대학 주관 연구소는 대학에서 신청 분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연구소에 한해 취합 제출(신청서 작성 전 대학-연구소 간 심도 있는 협의 필요)
- ※ 기존 공고에 따라 제출한 기관 중 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지원 불가

4. 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

- 재원: 법인회계-해외 첨단 융합연구소와 공동연구소 설립
- 선정(지원) 규모: 5개 내외×1억 원=5억 원(※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① 국제협력 MOU 체결(공동연구센터 설치 내용 포함)
 - ② 국제공동연구
 - ③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④ 기타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활동

- 지원 방법: ①~④ 내용으로 교내 연구과제(정책연구과제)로 협약 체결 후 연구비 관리기관에 예산 배정(SRnD로 예산 집행·관리)

5. 지원조건 및 고려사항

- 기관별 지원 예정금액(1억 원) 내에서 본 사업 목적에 맞게(아래 ①~④ 항목) 예산 편성하여 연구처 교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
 - 사업명: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 연구과제명: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신청 연구소명)”
 - 연구기간: 2025. 1월~2025. 12월
 - 연구비: 1억 원
 - 연구책임자(본 사업 총괄 책임자): 연구소장
 - 연구내용: 아래 ①~④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① 국제협력 MOU 체결(공동연구센터 설치 내용 포함)

- 연구기간 내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연구센터 설치 내용을 포함하는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위원회의 연구소 규정 개정 심의**를 받아야 함
- MOU 체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 일정 기술
 -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해외 협력기관과 MOU 체결에 대한 협의 서류(이메일 등)를 제출하고, 사업 선정이 되면 2025. 2. 28.까지 체결 완료된 MOU 사본을 제출
기존에 체결된 일반학술교류 MOU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협정서 체결하여 신청 가능
 - ※ MOU 체결 절차는 국제협력과-4693(2020. 7. 31., "기관별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관리 절차 안내") 참고
 - ** 연구소운영위원회 → 소관 대학 → 연구시설위원회 → 전기관 조회, 법학연구소 자문 → 법제팀 → (확대간부회의) → 규정심의회위원회 → 학사위원회 → 공포(통상 4~5개월 소요)

② 국제공동연구

- 목적: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협력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 연구 분야: 첨단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연구기간: 2025. 1월~2025. 12월 중 6~10개월 이내로 설정하되 결과보

고서 제출 기한(2026. 2월) 고려 필요, 기간연장 불가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또는 연구소장이 지정
- 연구원: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원 1명 이상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참여연구원(해외 연구자 포함) 인건비 및 연구수당: 편성 불가
- 연구보조원 인건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표1] 인건비 계상기준 적용

③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 해외 협력기관과 협력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개최 장소 무관(학내 또는 해외 협력기관)

④ 기타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활동

- 해외 협력기관과 신진연구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타 활동 내용 기술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등 연구비 제반 규정 준수

6. 결과보고서 제출

- 2026. 2월까지 결과보고서 제출(PDF 등)
 - [서식 6-1] ①~④ 전체 항목 총괄 결과 보고서
 - [서식 6-2] ② 국제공동연구 연구결과 보고서
- ※ 결과 보고 시기 도래 시 지원금 정산 절차 등 상세 안내 예정

7. 심사 및 선정 절차

- 1단계(서류평가): 10개 연구소 내외 선정(2배수)
 -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및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2단계(발표평가): 5개 연구소 내외 선정(발표자: 연구소장, 대리발표 가능)
 - ※ 2단계 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5개 내외)에 본 사업 지원금(1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향후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학내 선정 절차 시 가점 부여

8. 주요 심사 사항(우대 조건)

-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사업 지원 분야 간 적합성
-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기관(대학, 연구소) 차원의 의지, 구체성, 실현 가능성
- 공동연구센터 설치 후 운영계획, 운영의 지속성 방안
- 해외 협력기관의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호응도, 의지
 - 대칭적 상호 투자(매칭펀드*) 여부 등
 - * 서울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 설치 등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외 협력기관이 투자하는 일체의 지원금(예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seed funding, 서울대학교 방문 여비, 체재비, 공동 워크숍 개최 경비 등. 본교 교원 또는 본교 투자 금액이 아님)
-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 ①~④ 항목의 예산 배분 및 편성의 적절성
- 2024년 연구시설 평가 우수 연구소는 단계별 평가 시 가점 부여

9.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 12. 11.(수)까지
- 신청방법: 반드시 지원 분야 및 자격요건 확인하여 공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본부 주관 연구소: 연구정책과로 직접 제출
 - 대학 주관 연구소: 주관 대학(원)에서 취합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 총괄표(엑셀)
 - [서식 2] 교내 연구과제 연구개발 계획서: ①~④ 항목을 포괄하여 10쪽 이내
 - [서식 3] 국제공동연구 연구계획서: ② 국제공동연구 계획 5쪽 이내
 - [서식 4] 연구소 발전계획서: 5쪽 이내
 - [서식 5] 증빙자료
(공동연구센터 설치, MOU 체결 등 협의, 해외 협력기관의 매칭펀드 투자의사 등 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10.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2024. 12. 11.(수)까지	사업 신청서 접수
2024. 12. 18.(수)까지	1단계 서류평가
2024. 12. 20.(금)까지	1단계 선정 결과 통보
2024. 12. 30.(월)까지	2단계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결과 통보
2025. 1월 중	교내 연구과제 협약(관리기관에 연구비 배정)
2025. 1월~2025. 12월	교내 (정책)연구과제 수행
2025. 2. 28.(금)까지	국제협력 MOU 사본 제출
2025. 12월까지	공동연구센터 설치
2026. 2월까지	결과보고서(국제공동연구 결과 포함) 및 정산서 제출

11. 행정 사항

- 연구소 내 국제공동연구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단계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소 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통상 4~5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수립
 -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 문의: 연구지원과 ☎ 880-5167
- 지원금은 기한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하며, 이월 및 연장 불가
- 사업 문의
 - (국제협력연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연구정책과 ☎ 880-2045
 - (국가연구소 지원사업) 연구정책과 ☎ 880-5196